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인건강진단 의무화 등 》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469호)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003호)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601호)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89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개요	1
II. 검토 의견	5
1. 노인 건강진단 등 의무화(박성민의원안)	5
2.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 금지(서미화의원안)	12
3. 노인복지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의무 신설(김기웅의원안) 19	
4. 노인복지시설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등(박용갑의원안)	27

I. 개요

1.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46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3. 13.
- (3) 회 부 일 : 2026. 3.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 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런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 27조제1항).

2.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00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31.

(3) 회 부 일 : 2026. 4.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제5항, 제57조제4호의2·제4호의3 신설 등).

3.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60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웅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24.

(3) 회 부 일 : 2026. 4.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4.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89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5. 8.

(3) 회 부 일 : 2026. 5.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 사회적 교류의 핵심 거점인 경로당 이용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전국 경로당 6만 9,061개 가운데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3,275개, 3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406개, 지하 경로당이 218개 등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곳이 3,899개에 달했으나,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698개에 불과하였음.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 설치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3, 제37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Ⅱ. 검토 의견

1. 노인 건강진단 등 의무화(박성민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第27條(健康診斷 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u>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歲 이상</u>의 者에 대하여 健康診斷과 保健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第27條(健康診斷 등) ① ----- -----<u>65세 이상</u> <u>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보건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u> ----- ----- -----. ②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재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구분할 수 있음. 노인이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¹⁾을 받게 되어 있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²⁾을 받을 수 있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검진(이하 “노인건강진단”이라 함)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부족한 검진항목을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급여법」 상의 건강검진과 상호 보완하여 실시되고 있음.³⁾

< 건강검진 실시 현황 >

구분	대상자	근거법률
건강보험가입자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만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수급권자	· 일반건강검진: 만 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
	* 노인건강진단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노인복지법」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및 「노인복지법」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함.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2)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 3) ‘202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참고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의 검진 항목은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문진과 진찰 ②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③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④구강검진 ⑤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⑥인지기능장애 검사 ⑦B형간염 검사, C형간염 검사 ⑧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⑨골밀도 검사, 폐기능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⑩생활습관평가 ⑪정신건강검사 등임.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항목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문진과 진찰 ②신체계측, 시력·청력 측정 ③인지기능장애 검사 ④골밀도 검사, 폐기능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⑤생활습관평가 ⑥정신건강검사 등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의 11개 항목 중 5개 항목(③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④구강검진 ⑤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⑦B형간염 검사, C형간염 검사 ⑧구강 치면세균막 검사)을 제외하고 있음.

<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항목 비교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1. 문진과 진찰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2. 신체계측, 시력·청력 측정 *혈압측정 없음
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없음
4. 구강검진	없음
5.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없음
6. 인지기능장애 검사	3. 인지기능장애 검사
7. B형간염 검사, C형간염 검사	없음
8.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없음
9. 골밀도 검사, 폐기능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4. 골밀도 검사, 폐기능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10.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담배사용,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담배사용,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1.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일반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함.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및 「의료급여법」 시행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함.

- 노인건강진단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의 항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차와 2차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음. 1차 진단항목은 ①기본 진료(진찰, 체위검사, 치과검사) ②혈액 검사 ③기타 검사(요검사, 안 검사, 간이인지기능검사, 흉부 X선 촬영)이고,
- 2차 진단항목은 ①기본진료(진찰) ②흉부질환 ③순환계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④간질환 ⑤신장질환 ⑥빈혈 ⑦당뇨질환 ⑧안질환 ⑨치매 ⑩골다공증 검사 ⑪낙상검사임. 2차 노인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 유소견자 및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되고 있음.

< 노인건강진단 항목(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

구 분		진 단 항 목
1차	기본진료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2. 체위검사(신장, 체중, 근거리 및 원거리 시력, 청력, 혈압) 3. 치과검사(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혈액검사	1. 혈색소 2. 총콜레스테롤 3. 혈청지오티 4. 혈청지피티 5. 혈당 6. 매독 ^{주1)}
	기타검사	1. 요검사(요당, 요단백, 요잠혈,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주2)}) 2. 안검사(정밀안저검사, 양측) 3. 간이인지기능검사(MMSE) (인지선별검사(CIST)로 대체 가능) 4. 흉부 X선 간접촬영
2차	기본진료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흉부질환 기타 흉부질환	1. 흉부X선 직접촬영 2. 결핵균 집균도말검사
	순환계 질환	고혈압 1. 혈압, 2.정밀 안저 검사(양측) 3. 심전도 검사
		고지혈증 1. 혈압, 2.트리그리세라이드 3. HDL 콜레스테롤
	간질환	1. 총단백 2. 알부민 3. 알카라인포스파타제 4. 총빌리루빈(총·직접) 5. 유산탈수효소(LDH) 6. 알파휘토단백
	신장질환	1. 요침사 현미경 검사 2. 요산 3. 크레아티닌 4. 요소·질소
	빈혈	1. 헤마토크리트 2. 백혈구수 3. 적혈구수
	당뇨질환	1. 식전혈당(FBS) 2. 식후 혈당(PPS)
	안질환	1. 안압검사 2. 각막곡률 검사 3. 굴절 및 조절검사
	치매	1. 치매척도검사(GDS 또는 CDR)
	골다공증 검사	1.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
	낙상검사	1. 하지기능, 평형성

주1)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실시

주2) 임질과 클라미디아감염증의 경우 소변검체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에서 실시

※ 1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의사의 판단이나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예: 채혈 등) 생략 가능

※ 2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및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 실시

□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건강검진의 사각지대가 축소되어 노인 질환의 사전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노인건강진단은 1983년 해당 사업이 처음 실시된 이후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비용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노인건강진단은 이에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체계 정합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이양의 취지와 상충하고, 지자체 재정부담 과중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 85. 노인건강진단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신중검토> ◇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20년전 지방이양된 사업이고, 지방재정 부담, 낮은 개정실익 등을 고려할 때 신중검토 필요 ◇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되어, 보조금법상 보조금지급제외 대상으로 국비 보조 없이 지자체 자율 시행 중임 -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의무화는 지방이양 취지와 상충하고, 지자체 재정부담 과중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 ◇ 한편, 65세 이상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건강보험가입자)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으로 구분되고,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정 실익이 낮음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항목 확대(건강보험가입자와 일치)를 위한 지적(인권위, 국감)과 예산 확보 추진중(건강증진과, 6개->11개, 약22억원)
기획 예산처	<신중검토> ◇ 노인건강진단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된 사무로, 국가를 시행주체로 규정한 책임의무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조정 시 지방이양 취지와 상충될 소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월)'에 따라 지방이양 ◇ 의무규정 전환이 필요한 경우 시행주체에서 국가 삭제 필요 < 대안문구 > 제27조(건강진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 안전부	<신중검토> ◇ 지자체 지원 의무화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현행 임의규정을 유지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 바람직
대전시	<신중검토> ◇ 열악한 지방재정 및 수행인력 등을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 투입과 시군구 행정인력 업무량 급증 등 부담 불가피
대한 의사협회	◇ 재정 및 행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도와 중복 가능성 ◇ 검진의 실효성 및 질 관리에 대한 우려 ◇ 노인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 접근의 한계 ◇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에 따른 제도 이행 가능성 문제 ☞ 동 개정안은 재정적 부담, 기존 제도와 중복, 운영 체계의 미비 등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충분한 재정 검토 및 제도 설계 보완을 통한 구체적 근거자료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반대

2.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 금지(서미화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제5항, 제57조제4호의2·제4호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u>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u> <u><신설></u>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신고인은</u> ----- -----. ④ <u>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인에게 노인학대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u> <u>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u> <u>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u>

<신 설>

④ · ⑤ (생 략)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 ·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 ·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 · 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 · 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 · 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 · 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⑤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⑧ 제6항 및 제7항-----

-----.

제57조(벌칙) -----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u>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u> 의무를 위반한 자 <u><신설></u> <u><신설></u> 5. · 6.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신분 노출 금지</u>----- ----- 4의2. 제39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 4의3. 제39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노인학대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5. · 6. (현행과 같음)
--	---

2. 주요 검토 사항

-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7,503건 수준이던 노인학대 신고는 2024년에는 22,746건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건은 2010년 3,068건에서 2024년 7,167건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6.25% 수준의 증가 추세를 보였음.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사례 판정 사건(2010-2024) >

(단위: 건, %)

구 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연평균 증감
신고접수	7,503	9,340	10,569	12,009	15,482	16,973	19,552	22,746	8.24
학대사례*	3,068	3,424	3,532	4,280	5,188	6,259	6,807	7,167	6.25

*자료: 「2010-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시설학대(생활시설, 이용시설)와 2024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병원(요양병원, 일반병원) 사례 중 사례판정이 ‘잠재**’인 사례는 학대사례에서 제외됨

**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노인학대는 피해 당사자보다 이웃, 지인, 내부 고발자 등 제3자의 신고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내부 고발자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신고자가 드러나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게 될 소지가 있음.

-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상실 및 인사상·직무상 불이익조치와 더불어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를 금지하고, 이를 위

반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치에 따라 신고인은 안심하고 학대 피해 노인을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고,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직무상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등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우선, 개정안에서는 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금지되는 불이익 조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포괄적 금지조항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⁵⁾는 불이익 조치 유형을 열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반면,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⁶⁾는 불이익 조치의 유형을 열거하되, 포괄적 성격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규정 >

구분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성폭력방지법	
	금지	벌칙	금지	벌칙	금지	벌칙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 상실조치	○	○	○	○	○	○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인사조치	○	○	○	○	○	○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재배치 등 인사조치	○	○	○	○	○	○
임금·상여금 등 차별적 지급	○	○	○	○	○	○
자기계발 기회 박탈 등 근무조건 차별	○	○	○	○	○	○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위해	○	○	○	○	○	○
부당한 직무감사·조사 및 결과 공표 등	○	○	○	○	○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	-	-	-	○	○

다음, 개정안에서는 불이익 조치 및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바,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 ②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2⁷⁾에서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와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관련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496)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수용하는 입장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유사법령*과 비교할 때 노인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가 아닌 노인학대“범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은 각각 아동학대범죄신고 및 장애인학대범죄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7) 「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② 제5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노인복지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의무 신설(김기웅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1조의3(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① 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 목욕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u>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나. 주요 검토 사항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 총 7종의 시설로 구분되고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눌 수 있음.⁹⁾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2024년 기준 4,640개가 설치·운영 중임.

8)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9)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시설 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개소, 명)

종 류		시설(기관) 수	입소정원
합 계		96,430	412,917
노인주거복지시설	소 계	281	19,412
	양로시설	166	9,567
	노인공동생활가정	72	614
	노인복지주택	43	9,231
노인의료복지시설	소 계	6,195	250,898
	노인요양시설	4,640	236,36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55	14,533
노인여가복지시설	소 계	70,935	-
	노인복지관	454	-
	경로당	69,260	-
	노인교실	1,221	-
재가노인복지시설	소 계	18,745	142,607
	단기보호서비스	60	255
	방문간호서비스	376	-
	방문목욕서비스	4,794	-
	방문요양서비스	8,668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71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39	-
	주·야간보호서비스	3,790	142,352
	노인보호전문기관	39	-
노인알자리지원기관		215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0	-

자료: 「2025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에 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규율하고 있고 동 법에서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을 적용 대상¹⁰⁾으로 규정하고 있음.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 8. (생략)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3. ~ 25. (생략)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¹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조¹²⁾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동 법 제12조¹³⁾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제3조 관련)¹⁴⁾에서는 다중이용 시설별로 적용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12)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3)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mu\text{g}/\text{m}^3$)	초미세 먼지 (PM-2.5) ($\mu\text{g}/\text{m}^3$)	이산화 탄소 (ppm)	폼알데 하이드 ($\mu\text{g}/\text{m}^3$)	총부유 세균 (CFU/ m^3)	일산화 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 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 실, 항만시설 중 대합 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 미널, 장례식장, 영화상 영관,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의 영업시설, 목욕장업 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 관, 대규모점포, 학원		40 이하				
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u>노인요양시설</u> , 어린이 집, 실내 어린이놀이시 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라.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 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 한편 예산지원과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인요양 시설 환기설비(공기순환기) 설치 예산이 한시적으로 지원¹⁵⁾된 바

15) 지원 실적 : '23년 5,398대 → '24년 3,180대 → '25년 3,148대

있으며,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및 겨울철 독감 유행을 대비한 ‘장기요양기관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배부, 노인요양시설 대상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¹⁶⁾ 실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반기별 환기관리 모니터링¹⁷⁾이 실시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예산 지원 내역 >

연도	집행내역
2023	○ 4,712백만원(1,790천원x6,580대x40%)
2024	○ 2,356백만원(1,79만원x3,290대x40%)
2025	○ 2,356백만원(1,790천원x3,290대x40%)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2026. 2.) 목차 일부 >

제3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 1.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가. [1단계] 사전 대비·대응 나.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다. [3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 라. [4단계]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마. [5단계] 경보 발령 바. [6단계]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사. [7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2. 보고 서식	제4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1. 일반적인 대응요령 2. 노인요양시설 등 대응요령 3. 노인 등 기저질환자 대응요령 4. 점검 서식 제5장 고농도 오존 대응 요령 1. 오존 예·경보제 2. 고농도 오존 대응 요령
---	--

□ 개정안은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의 설치·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노인의 호흡기 건강에 긍정

16) 노인요양시설 안전점검 시 미세먼지 대응 점검(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자체점검 및 자체점검 대상 시설의 15% 이상 지자체 현장점검)

17) 환기관리 점검표, 환기종류, 자연환기 횟수 등 점검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 일원화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도 포함되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¹⁸⁾과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경우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준과 대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현행 실내 공기질의 유지·관리 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 정합성 측면에서 「노인복지법」보다는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그 대상시설의 범위가 목적과 기능 및 형태에 따라 상당히 넓어 실내 공기질의 유지·관리 기준대상에 대한 구체적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입장임.

18)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 관련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총괄적 관리 및 조정,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관리·평가, 관련기관과의 사업연계 및 전국 홍보 등이 주요 업무이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학대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등이 주요 업무임.(202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기관·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 신중검토 노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 - 다만, 현행 실내 공기질의 유지·관리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이미 다양한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 법률 적합성의 측면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 및 제3조 1항 11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 보험공단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 체계 내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부산노인 보호 전문기관	현행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이 직접 방문, 거주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제외시설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필요 * (수정안) 제31조의3(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①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한국노인 종합복지관 협회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단기·일시 이용 중심의 시설로, 장기 체류형 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의무를 부과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음- 또한 자가측정, 관리자 교육, 오염도 검사 등 추가 행정·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적용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4. 노인복지시설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등(박용갑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이동보조기기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등 이용상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1층이 아닌 경우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인의 시설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제37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1조의3(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상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①</u> <u>노인복지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노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등(이하 “이용상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u>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상 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37條(老人餘暇福祉施設의 設置)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⑤ (생략)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입비 등의 보조) ① · ② (생
략)

<신 설>

第37條(老人餘暇福祉施設의 設置)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보건의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접근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입비 등의 보조)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접근 편의성 향상 및

第43條(사업의 정지 등) ① (생략)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老人餘暇福祉施設 또는 在家老人福祉施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다. 1.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施設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 5. (생략) ③ ・ ④ (생략)	<u>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의 설치・개선, 노후 경로당의 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第43條(사업의 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제37조제4항・제6항----- ----- -----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노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등 이용상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법 제31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자노인 전용쉼터로 구분하고 있음.¹⁹⁾ 2025년 12월말 기준 노인복지시설은 총 97,232개소가 설치·운영 중임.

< 노인복지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2025. 12월말 기준)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97,232	283	6,211	71,309	19,146	40	223	20

*자료: 보건복지부

19)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조²⁰⁾는 이 법의 목적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2조²¹⁾는 “장애인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하는데,

시행령 제2조²²⁾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2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5.생략)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7조²³⁾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1」²⁴⁾은 노유자시설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8조²⁵⁾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²⁶⁾은 노인복지시

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설의 경우 장애인등이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등 7개의 편의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욕실 등 4개시설은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편의시설과는 구별되는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동법 제16조²⁷⁾는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등의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비치 용품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정할 수도 있음.

동 법 적용 대상 시설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노인복지 시설이 포함되므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휠체어, 노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 등 이동보조기기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등 이용상 편의시설을 갖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장애인등편의법에 일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 한편, 현행법 제37조²⁸⁾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구분하고 있음.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과 제2항²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28)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9)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024년 말 기준 경로당 69,061개소 중에서 건물 지하, 2층 또는 3층 이상 위치한 경로당 수는 3,899개소이고, 이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698개소임.

<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

(기준: 2024. 10월말)

전체 경로당 수 (A+B+C+D)	층수 현황						
	건물 지하에 위치한 경로당 수		건물 1층에 위치한 경로당수 (B)	건물 2층에 위치한 경로당 수		건물 3층 이상에 위치한 경로당 수	
	전체 (A)	엘리베이터 설치		전체 (C)	엘리베이터 설치	전체 (D)	엘리베이터 설치
69,061	218	53	65,162	3,275	388	406	257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의 안전사고 중에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더 넘어져 부상을 당하는 등의 낙상 사고가 대표적인데, 2025년 재난·사고피해조사 보고서(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사고 유형별 피해경험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추락(낙상)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안전사고 유형별 피해경험 >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명)	교통 사고	추락 (낙상)	수난 사고	화재 및 폭발 사고	중독	이물질 삼킴/ 흡인/ 질식 사고	화상	그 외 기타 생활 안전 사고
전체		1,487	46.4	25.7	0.4	0.3	6.4	0.4	10.4	14.9
계 층 별	일반국민	579	56.2	15.8	0.3	-	7.7	0.4	12.4	11.5
	취약계층	908	34.1	38.0	0.5	0.6	4.9	0.6	7.8	19.1
연 령 층 별	13세미만 (어린이)	138	42.0	27.2	1.3	-	7.2	2.9	5.7	19.3
	13~64세	808	53.1	17.1	0.2	0.4	7.4	0.3	12.0	14.0
	65세이상 (노인)	541	28.7	49.5	0.4	-	3.3	0.1	7.4	16.0

* 자료: 「2025 재난·사고피해조사 보고서」, 행정안전부

□ 개정안은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부칙 제2조는 현재 운영중인 경로당으로서 승강기 등 편의시설 등이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3년 이내에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노령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노인을 포함한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접근 편의성 향상 및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의 설치개선, 노후 경로당의 개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기준 경로당의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경로당수는 68,936개소이고, 2000년 이전에 개소된 경로당은 28,933개소이고,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개소한 경로당은 20,189개소이며,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개소된 경로당은 17,158개소이고, 2020년 이후에 개소된 경로당은 2,656개소로서, 개소된지 25년이 도과한 경로당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 경로당 개설 연도별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

계	'00년이전		'01년-'10년		'11년-'20년		'20년이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68,936	28,933	42.0	20,189	29.3	17,158	24.9	2,656	3.9

* 자료: 보건복지부(대한노인회 DB '25.3월 기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경로당의 신축비, 증개축비,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2025년 기준 동 사업비는 총 1,799억 4,800만원으로 신축비 71,891백만원, 증개축비 22,772백만원, 환경개선 등 83,28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 경비는 모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지자체 예산) >

(2025. 3월 기준 / 단위: 백만원)

합계	신축비			증개축비			환경개선 등		
	소계	광역	기초	소계	광역	기초	소계	광역	기초
177,948	71,891	6,804	65,087	22,772	1,195	21,577	83,285	9,141	74,145

* 자료: 보건복지부

개정안은 경로당의 접근편의시설의 설치·개선, 노후 경로당의 개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9조제1항³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제1항³¹⁾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급 대상 제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바·부식비 지원을 제외한 경로당 운영사업은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로당 운영사업은 일반적으로 지방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관련 법령과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주’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특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로당은 시설장이나 상주 관리직원이 없어 경로당 회장 등을 해당 의무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노유자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상 편의 제공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2025. 12. 31. 개정)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의무를 부과하고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의 비치를 권장하고 있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 차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봄.

아울러 신규 경로당에 승강기 등 접근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경로당에도 3년 이내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의 설치 제한이나 폐지로 이어져 오히려 지역노인의 여가활동 및 복지서비스 이용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지자체·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노인복지시설 시설주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24.12월말 기준 70,936개소, 노인복지관 455개소(0.6%), 경로당 69,260개소(97.6%), 노인교실 1,221개소(1.7%))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로당의 경우 시설장, 상주 관리직원이 없으며, 경로당 회장 등은 이용 노인 중 경로당 대표일 뿐 ‘이용상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자’로 보기 어려움 -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등을 종합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법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에서는 ‘이용상 편의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과 전동보장구 수리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노유자시설 포함)의 시설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장애인등편의법 규정과 상이하며, ‘이용상 편의시설’ 관련 비용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됨(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이양사업) - 또한, 승강기 등 접근 편의시설을 신규 경로당 설치 시 의무화하고, 기존 경로당도 3년 이내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증가(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이양사업)시키는 한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로당
-------	--

	의 설치 제한, 기존 경로당의 폐지로 이어져 지역 내 이용 노인의 여가 활동을 제약하고 노인복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1층 이외에 설치된 경로당 3,899개소 중 엘리베이터 미설치 경로당은 3,201개소로 전체 경로당 69,260개소(24년말 기준)의 약 4.6%에 해당 ※ 위 의견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에 한함
부산광역시	대부분 경로당은 신축보다는 기존(노후된) 시설에 소규모로 설치된 경로당이 대다수로 신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설치부지 확보, 건축 구조 안전성 확보, 유지관리 비용 증가,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경로당은 소규모 이용시설의 특성상 승강기 관리주체의 전문적인 유지 관리 역량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승강기가 있는 시설에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로당 활성화 취지를 저해할 수 있으며, 4층 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으로 승강기 설치 요건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현재도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및 운영비 지원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승강기 설치까지 확대할 경우 지방재정 부담 가중화 및 초고령 사회의 건전한 여가공간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경기도	기존 건축물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한 경로당의 경우 승강기 설치, 구조 변경, 임차 물권 확보 등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설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운영상 어려움 및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는 시설 여건에 따라 승강기 외에 계단·경사로 등 다양한 접근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바, 경로당의 공간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승강기 이외의 대체 편의시설 설치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
강원특별자치시	“승강기 설치” 규정 검토 필요(삭제) - 대부분 경로당이 단층 또는 2~3층인 상황에서 승강기 설치를 법에 규정할 경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규정*과 상충 우려 * '6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승강기 설치 의무화'(건축법 제64조제1항)³²⁾ - 승강기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타 생활공간 등의 이용 공간 축소의 우려가 있으며, 승강기 설치 비용 및 운영비 추가 소요에 따른 건축비 상승으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증축 및 신축(도) : 연평균 25개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개정안에서는 “이용상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안 제31조의3제1항), ‘전동보장구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1조의3제2항)

	- <u>'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 책임을 약화시켜, 미지원 시 위탁운영체(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등)가 자체 재원으로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필요</u> - 또한 <u>경로당 및 기존 노인복지관은 유희공간 부족으로 전동보장구 보관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구조상 설치가 곤란한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u>하며, 안 제31조의3제2항에 '단, 시설의 구조적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기존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 추가 필요
--	---

문 의 처

02) 6788-5499

32)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